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3. 31 선고 2020가단103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조세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이병부, 이상동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9.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4,980,3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 중 114,980,358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과 보험사고 발생

(1) 원고는 2018. 11. 23. (주)B(이하 'B' 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D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억 5,200만 원, 보증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1. 28. D은행 앞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은 B에게 무역어음 명목으로 2018. 1. 8. 대출해 준 124,720,237원 채무의 만기를 연장해 주었다.

(3) B는 2019. 12. 27. D은행에 위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3.

D은행에 원리금 합계 113,812,400원(=원금 112,248,213원+이자 1,564,1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167,958원[=(589,750원+601,870원)-23,662원(송달료 환급)]을 대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114,980,358원(=대위변제금 113,812,400원+대지급금 1,167,958원)이다.

(4)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3114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8. 11. 위 법원은 "B 는 원고에게 114,980,358원 및 그 중 113,812,4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9. 29.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 라 한다)가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의 대표이사인 F를 만났다. F는 피고에게 2주일만 단기대여 해주면 6%의 이자를 주고 B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6. 3. E에 7억 원을 2019. 6. 3.부터 2019. 6. 18.까지 6%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같은 날 E와 B는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런데, E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9. 7. 26. E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9. 8. 1. B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피고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E와 B는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E, B는 2019. 9. 11.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등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 채무변제 합의에 따라 B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658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러나,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20. 1. 29. 기준 파주시 G 답 1,334㎡ 3억 7,618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575,560,700원으로 감정되었으나 12억 2,944만 원에 낙찰되었고, 2021. 4. 1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93,064,33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금 채권 중 113,812,400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1. 1. 20. 가처분결정(이 법원 2021카단100064)이 있었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위 사해행위(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위 사해행위 당시에 B는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은 배당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대부분 2020. 3. 13. D은행에 대위변제금 113,812,400원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8. 11. 23.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한 B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9. 11.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19. 12. 27. D은행에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사해행위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B가 2019. 12. 27. D은행에 연체를 하여 원고가 2020. 3. 13.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가 무자력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2, 13, 14호증, 을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청주지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9. 9. 30. 기준 자산총계는 491억 3,095만 원인데, 그 중 부채총계는 314억 7,541만 원인 사실, B의 청주지역 공장은 2020. 3. 30. 기준 그 감정가가 281억 4,655만 원임에 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J)에서 182억 8,000만 원에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청주지역 공장이 경매절차에서 100억 원 상당이나 저가에 낙찰되어 B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당시 B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부동산 목록

1. 파주시 K 공장용지 926㎡
2. 파주시 K에 있는 L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공장
1층 180㎡
3. 파주시 K에 있는 M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공장
1층 180㎡
4. 파주시 N 공장용지 1,000㎡
5. 파주시 N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공장
1층 287.55㎡
1층 54.5㎡
6. 파주시 O 도로 61㎡, 끝.

